

2023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1. 선발 예정 과목 및 선발 예정 인원

(단위: 명)

순	선발예정 과목	선발예정인원(명)			순	선발예정 과목	선발예정인원(명)		
		일반	장애	소계			일반	장애	소계
1	국어	10	1	11	13	영어	5	-	5
2	수학	12	1	13	14	기술	4	1	5
3	물리	4	-	4	15	가정	4	-	4
4	화학	4	1	5	16	정보·컴퓨터	8	1	9
5	생물	5	-	5	17	기계	1	-	1
6	지구과학	5	-	5	18	전자	2	-	2
7	일반사회	4	1	5	19	미용	1	-	1
8	역사	5	-	5	20	조리	1	-	1
9	지리	5	-	5	21	보건	4	-	4
10	도덕·윤리	7	1	8	22	영양	5	1	6
11	체육	7	1	8	23	전문상담	1	-	1
12	음악	3	-	3	24	특수(중등)	1	-	1
					계	24개 과목	108	9	117

- ※ 장애인 구분 선발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 ※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 예정 인원엔 못 미치더라도 일반응시자로 총원하지 않습니다.
- ※ 비교수 교과(보건, 전문상담, 영양) 교사는 유·초·중등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우리교육청 임용계획에 따라 임용 예정입니다.

2. 응시 자격

① 선발 분야별 응시 자격

선발 분야	응시 자격 (2023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 포함)
중등학교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 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수학교 (중등)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 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치료교육, 재활복지, 직업교육 포함) ※ 특수학교 교사(이료)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보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양호교사(1급,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문상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상담교사(1급,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전문상담교사(초등, 중등, 특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 교도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상담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시험 응시 대상자가 아님
영양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교사(1급,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장애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 구분선발 예정 표시과목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장애인 구분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선발 과목이 없거나 구분선발 지원을 희망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그 밖에 시험 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 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같게 처리합니다.

※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 후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를 제출해야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함

② 분리·변경 또는 통합 표시과목 안내

표시과목	응시 가능 자격
물리	물리, 과학(물리)
화학	화학, 과학(화학)
생물	생물, 과학(생물)
지구과학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일반사회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역사	역사, 사회(역사)
지리	지리, 사회(지리)
도덕·윤리	도덕·윤리, 윤리, 국민윤리
영어	영어, 외국어(영어)
기계	기계·금속, 공업, 기계,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전자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기술	기술, 기술·가정
가정	가정, 기술·가정
정보·컴퓨터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개정 1994.9.26. 교육부령 제655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16.12.8. 교육부령 제112호)에 의거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③ **응시 연령: 제한 없음** ※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④ **응시 자격 제한**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응시자격)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⑤ **결격자 판단 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3.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① 시험 일정 및 장소

시험 단계별	일자	시험 과목	시간	대상	시험장소	
제1차 시험	2022. 11.26.(토)	교육학	• 1교시 (60분) 09:00 ~ 10:00	제1차시험 응시자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장소 공고 2022.11.18.(금) 10:00 예정 ※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새소식-고시공고) 	
		전공	A			• 2교시 (90분) 10:40 ~ 12:10
			B			• 3교시 (90분) 12:50 ~ 14:20
제2차 시험	2023. 1.12.(목)	실기·실험 평가	09:00 ~	제1차시험 합격자 중 실기·실험 평가 실시과목 응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장소 공고 2022.12.29.(금) 10:00 예정 ※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새소식-고시공고) 	
	2023. 1.18.(수)	수업실연	09:00 ~ (평가시간: 20분)	제1차시험 합격자 (비교수교과 제외)		
	2022. 1.19.(목)	교직적성 심층면접	09:00 ~ (평가시간: 15분)	제1차시험 합격자 (전체)		

※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 응시자 예비소집은 별도로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 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의 시험 일정 및 장소, 운영사항 등은 코로나19 감염병 추이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합니다.

② 합격자 발표

구분	일시	장소(방법)
제1차시험 합격자	2022. 12. 29.(목) 10:00 예정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공고 (새소식·인사·채용 > 고시·공고)
최종합격자	2023. 2. 7.(화) 10:00 예정	

※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우리교육청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시험 과목 및 유형별 문항 수, 배점, 출제 범위

① 제1차 시험

시험 과목 및 유형			문항수	배점	출제 범위(비율) 및 내용
교육학	1교시 [60분]	논술형	1문항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2017. 8. 30.)의 [별표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기준’에 제시된 교직 이론 과목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특수(중등), 비교수 교과도 동일하게 적용
전공	A	단답형	4문항	8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2017. 8. 30.)의 [별표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 이수 과목(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교과교육학(25~3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과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가 고시한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까지 - 교과내용학(75~6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 ※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 특수(중등)도 동일하게 적용 ※ 비교수 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서술형	8문항	32점	
	B	단답형	2문항	4점	
		서술형	9문항	36점	
소계			23문항	80점	
합계			24문항	100점	

※ ‘출제 범위 및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에 공개한 <표시 과목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합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https://www.kice.re.kr>) 【열린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중등 교사임용시험】(2126283번)에 관련 내용 탑재합니다.

※ 제1차 시험 한국사 과목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관련 사항은 <공고문> “5. 응시원서 접수-④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인증서 제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2차 시험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점			비고								
		일반 교과	실기 실험 교과	비교수 교과									
실기·실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별 출제 범위 및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과목</th> <th>출제 범위 및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음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아노 연주 및 가창(피아노 반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아노 연주: 2015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양악곡 피아노 연주하기 - 피아노 반주와 가창: 2015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단선율 악곡(코드 제시)을 피아노 반주하며 노래 부르기 • 장구 치며 민요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민요를 장구로 반주하며 노래하기 • 시창: 단선율 8마디 보고 부르기 • 청음: 단선율 8마디 듣고 적기(음원 활용) </td> </tr> <tr> <td>체육</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 자유형(크롤), 평영, 배영, 접영 중 2개 • 육상: 트랙, 도약 영역 중 1개 • 체조: 맨손체조, 매트운동, 뽀름운동 중 1개 • 구기: 농구, 축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중 1개 ※ 교육청에서 시험 당일 지정 </td> </tr> <tr> <td>과학 교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별 해당 교과에 대한 탐구주제 수행 능력 평가 </td> </tr> </tbody> </table>	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아노 연주 및 가창(피아노 반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아노 연주: 2015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양악곡 피아노 연주하기 - 피아노 반주와 가창: 2015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단선율 악곡(코드 제시)을 피아노 반주하며 노래 부르기 • 장구 치며 민요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민요를 장구로 반주하며 노래하기 • 시창: 단선율 8마디 보고 부르기 • 청음: 단선율 8마디 듣고 적기(음원 활용)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 자유형(크롤), 평영, 배영, 접영 중 2개 • 육상: 트랙, 도약 영역 중 1개 • 체조: 맨손체조, 매트운동, 뽀름운동 중 1개 • 구기: 농구, 축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중 1개 ※ 교육청에서 시험 당일 지정 	과학 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별 해당 교과에 대한 탐구주제 수행 능력 평가 	-	30	-	예체능 과학교과
	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아노 연주 및 가창(피아노 반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아노 연주: 2015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양악곡 피아노 연주하기 - 피아노 반주와 가창: 2015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단선율 악곡(코드 제시)을 피아노 반주하며 노래 부르기 • 장구 치며 민요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민요를 장구로 반주하며 노래하기 • 시창: 단선율 8마디 보고 부르기 • 청음: 단선율 8마디 듣고 적기(음원 활용)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 자유형(크롤), 평영, 배영, 접영 중 2개 • 육상: 트랙, 도약 영역 중 1개 • 체조: 맨손체조, 매트운동, 뽀름운동 중 1개 • 구기: 농구, 축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중 1개 ※ 교육청에서 시험 당일 지정 											
과학 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별 해당 교과에 대한 탐구주제 수행 능력 평가 												
수업실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50	20	-	비교수 교과 제외								
교직적성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등 (외국어 과목은 일정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50	50	100	모든 교과								
합계(배점)		100	100	100									

※ 코로나19 상황이 심해지면 응시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출제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 안내(공고) 예정입니다.

※ **체육 교과**는 2024학년도부터 실기평가 출제 범위와 내용을 변경합니다. 체육 교과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붙임 4. 안내 자료> 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구분	출제 범위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가 고시한 교육과정까지 										
중등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2호(2022.1.17.)까지 • 교과: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9.23.)까지 <p>※ 단, 사회과, 전문교과II, 영어과, 수학과, 실과(기술·가정), 정보과는 아래 출제 범위까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과목</th> <th>출제 범위</th> </tr> </thead> <tbody> <tr> <td>사회과</td> <td>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2018.7.27.) 까지</td> </tr> <tr> <td>전문교과II</td> <td>교육부 고시 제2018-150호(2018.4.19.) 까지</td> </tr> <tr> <td>영어과</td> <td>교육부 고시 제2020-225호(2020.4.14.) 까지</td> </tr> <tr> <td>수학과 실과(기술·가정) 정보과</td> <td>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2020.9.11.) 까지</td> </tr> </tbody> </table>	과목	출제 범위	사회과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2018.7.27.) 까지	전문교과II	교육부 고시 제2018-150호(2018.4.19.) 까지	영어과	교육부 고시 제2020-225호(2020.4.14.) 까지	수학과 실과(기술·가정) 정보과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2020.9.11.) 까지
과목	출제 범위										
사회과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2018.7.27.) 까지										
전문교과II	교육부 고시 제2018-150호(2018.4.19.) 까지										
영어과	교육부 고시 제2020-225호(2020.4.14.) 까지										
수학과 실과(기술·가정) 정보과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2020.9.11.) 까지										
특수학교교사 특수교육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호(2022.1.17.)까지 <p>※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38호(2020.9.10.))을 적용</p>										

교과 구분

교과	교과과목	비고
일반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학교 표시과목(특수 포함) 	
비교수 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전문상담, 영양 	
실기·실험평가 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체능 교과(체육, 음악) • 과학 교과(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참고 사이트

구분	주소	비고
출제 범위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s://www.kice.re.kr)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www.ncic.re.kr) 	
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http://www.textbook114.com)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①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기간

○ 접수 기간: 2022. 10. 17.(월) 09:00 ~ 10. 21.(금) 18:00 【5일간】

-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10.21.)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 단, 원서접수 기간 내 매일 22:00~24:00 사이에는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응시 수수료 결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접속 폭주로 접수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이유로 마감 시간까지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취소 기간: 2022. 10. 22. (토) 13:00 ~ 10. 24.(월) 18:00 【3일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도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 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지원자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며, 취소 기간에는 추가 접수, 기존 원서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 마감 후 취소 기간에 취소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중복지원 금지

○ 세종시에 지원한 사람은 같은 날 시행하는 다른 시도의 《국·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중복지원 할 수 없습니다.

- 단, 장애인 구분선발 과목에 지원하는 사람은 2개 시도의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까지 중복지원 할 수 있습니다. (응시는 한 곳만 가능)

❖ 장애 구분모집 지원 예시

A시 공립 국어 지원, B도 공립 국어 지원 가능

-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중복지원을 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 중복지원 관련 주의 사항

중복접수 한 응시원서는 **최초 접수된 응시원서만 인정**하며, 그 외 응시원서는 응시원서 취소 기간 전에 취소됩니다.

③ 접수 방법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접수

- 구체적인 응시원서 접수 방법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s://edurecruit.sje.go.kr> **【중등교원채용】**

❖ 다른 시도도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니 접수 사이트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사이트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컴퓨터(PC) 환경

- 운영체제(OS): 32Bit의 한글 Windows 8 이상 **【32Bit의 한글 Windows 10 권장】**
- 인터넷 브라우저: PC버전 Edge, Chrome 등

❖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PC 기반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 컴퓨터(PC) 환경문제로 오류가 발생하면 다른 컴퓨터(PC)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③ 사진 등록

-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 외교부 누리집 “여권 사진 규격 안내” 참고

안내 바로가기 >> <https://www.passport.go.kr/issue/photo.php>

【사진 예시】 표준사진 	【사진 등록 시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 흰색 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사진 •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 • 사진 파일 종류: 확장자가 "jpg, gif, jpeg, png"인 파일 • 사진 파일 크기: 30KB 이상 100KB 이내
---	---

사용 가능 사진 ■ 흰색 배경 (얼굴 크기 3.2cm~3.6cm) 	사용 불가 사진 ■ 상반신 사진 사용금지 
---	--

- ❖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진 유형
 - ① 본인 확인이 곤란하거나,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난 사진
 - ② 사진 규격, 사진 파일 "확장자 및 크기"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 ③ 포토샵 등으로 대폭 수정한 사진
- ❖ **대리 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고 판단하면 경찰관 입회하에 지문 대조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④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로그인 비밀번호

-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로그인 비밀번호는 영문자 대문자 및 소문자, 특수 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여, 12자리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 비밀번호를 잊었을 경우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로그인 화면의 '비밀번호 찾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⑤ 응시 수수료 납부

- 금액: 25,000원
- 방법: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은행 계좌이체 (전자결제방식으로 납부)
 - ※ 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지만,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는 할 수 없음
-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는 전자 결제 대행 서비스 계약 체결 업체인 (주)케이지이니스의 명의로 청구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사람만 응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제2차 실기과목(체육, 음악) 및 실험과목(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응시자는 응시 수수료 10,000원을 실기·실험평가 당일(2023.1.12.)에 현장에서 현금으로 납부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⑥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대상 및 신청

- 응시 수수료를 면제(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아래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응시 수수료를 면제(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 응시원서 해당란(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체크 ⇨ 대상 구분 선택 ⇨ 제출서류 (신청서 등)를 스캔 파일로 첨부 ⇨ 제출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접수 마감일 (2022. 10. 21.(금)) 현재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붙임 3 서식】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 접수 기간 내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15p)” 참고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스캔 첨부 미제출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0. 25.(화) ~ 10. 26.(수)까지 제출하고,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방문 시 대리인 제출 가능(위임장 제출)

※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라도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응시 수수료를 결제해야 응시원서가 접수되며 접수 마감 후 응시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⑦ 수험표 출력

- 수험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 【중등 교원채용】 에서 2022. 11. 18.(금) 10:00부터 출력할 수 있습니다.(이면지 사용 불가)
- 수험표는 반드시 컬러로 출력해야 하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와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증은 수험표가 아닙니다.
- 수험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

① 인정 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인증서

- ※ 제47회(2020. 6. 27.(토))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급수 체계가 개편 【(기존) 고급·중급·초급 3종 6등급 ⇒ (개편) 심화·기본 2종 6등급】 되었으므로, 제47회 이후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심화 3급(만점의 60% 이상) 이상 인증이 필요함

②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인정 범위

- <중등학교교사, 보건·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제1차 시험 예정일(2022.11.26.(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인증서만 인정합니다.

❖ 2023학년도 시험 인정 범위

2017년 1월 1일 이후 시험부터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취득한 3급 이상 인증서(단,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한해 '원서접수 확인증'을 인증서 제출로 갈음함)

※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2. 11. 4.(금)

※ 제6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및 성적 발표일은 해당 시험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등임용시험 제1차 시험 예정일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또는 심화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 (응시 수수료 환불 불가)

③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관련 사항 입력 방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합격등급, 인증번호(8자리_예시:43-112345), 인증 일자 (회차 선택 시 자동 입력)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단,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3급 이상 인증서 취득예정자는 시험 종류, 접수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관련 사항 입력 예시>

<p>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p> <p>성 명 : 홍길동 생 년 월 일 : 1900년 1월 1일 성 별 : 남 합격 등급 : 1급 인증 번호 : 55-123456</p> <p>위 사람은 교육부 국가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제5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위 급수에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p> <p>2021년 9월 24일</p> <p>국가편찬위원회위원장</p>	<p>【3급 이상 인증서 취득자】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등급 : "1급" • 인증번호 : "55-123456" • 인증일자 : "55"회차 "20210924" <p>【3급 이상 인증서 취득 예정자】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종류 : "심화" 선택 • 접수번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본인 "접수번호" <p>※ 본인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증 확인</p>
---	--

④ 유의 사항

- 추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 여부를 응시자가 직접 입력한 '인증번호'로 해당 시험기관에 확인(조회) 요청하므로 반드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확인하고 정확한 인증번호(취득 예정자의 경우 접수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이 필요한 지원자는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한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⑤ 인터넷 접수에 대한 일반원칙

- 원서접수를 잘못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니 지원자는 처리단계별 절차에 따라 입력한 후 최종 확인(응시 수수료 결제 완료)을 해야 합니다.
 - 지원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응시원서 입력사항(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입력 내용을 누락 하거나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사람은 합격 결정을 취소합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등의 해당 사항을 허위로 입력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를 안내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 내용 조회 또는 확인 과정에서 응시원서의 기재 사항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지원자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 및 가(산)점 확인을 특별히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불합격하면 성적 무효처리 및 합격 취소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래 ⑥번의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는 인터넷 접수를 할 때 입력 내용과 같은 해당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 ⑥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 참고
- 지원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는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기간이 끝나면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⑥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

- 아래의 대상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할 때 입력 내용과 같은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첨부)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자	스캔 파일 첨부·제출서류
체육 과목 가산점 대상자 (체육 과목 지원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입상 또는 지도 실적증명서 1부 (“6. 가산점 및 가점” 참고) -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대한○○○협회, 대한○○○연맹, 대한○○○회)장이 발행한 증명서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취득한 실적만 유효함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6. 가산점 및 가점” 참고)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상자 증명서 1부 (“6. 가산점 및 가점” 참고)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장애인 구분모집 지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등에서 해당 서류 택 1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자	<p>【장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1부(제1차 시험용) 【붙임 2-1 서식】 - 신청서를 작성하고 날인 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의사 진단(소견)서 - “1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③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서류 참고 <div style="background-color: #e0ffe0; padding: 5px;"> <p>❖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편의 제공 신청 관련 사항은 ‘1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참고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험 편의를 제공할 수 없음 </div>

제출 대상자	스캔 파일 첨부·제출서류
	<p>【임신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 편의 제공 신청서 1부 (제1차 시험용) 【붙임 2-2 서식】 - 신청서를 작성하고 날인 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의사 진단(소견)서 - “1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③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서류 참고 <p>❖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으로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편의 제공 신청 관련 사항은 ‘1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참고 • 임신부 편의 제공 신청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험 편의를 제공할 수 없음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1부 - 신청서를 작성하고 날인 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p>❖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여야 함

※ **【스캔 파일 첨부·제출 방법】**

- 파일명을 <지원자 성명 - 제출 서류명> 으로 저장하여 첨부

☞ 예시 : 홍길동-경기입상 증명서.jpg, 홍길동-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jpg
홍길동-의사 진단서.jpg

※ **【시스템 오류 시 문의처】**

- 문의 가능 시간: 09:00~18:00 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시스템 장애 등 문의 : 세종교육청교육원 전산행정팀(☎044-902-1386)
- 기타 임용시험 문의 : 교원인사과 임용관리팀 (☎ 044-320-2331, 2321, 2324)

6. 가산점 및 가점

① 가산점 (입상 경력 및 지도실적)

부여 대상 및 내용			가산점	비고
체육 과목 가산점	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 올림픽,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 전국(동계)체육대회 1위(금메달) 입상자 	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과목에 한함 ▶ 정식종목에 한함 ▶ 중복 시 최고점 1개만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동계)체육대회 2위(은메달) 입상자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동계)체육대회 3위(동메달) 입상자 	2점	
	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 지도실적을 올린 자 * 올림픽,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 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 1위(금메달) 입상 지도실적을 올린 자 	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 2위(은메달) 입상 지도실적을 올린 자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 3위(동메달) 입상 지도실적을 올린 자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취득자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만 제1차 시험의 성적 총점에 위의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함(취업 지원 대상자, 의사상자 가점과는 별도임)

※ 가산점 적용 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2022. 10. 21.(금)) 기준

※ 전국체육대회 입상실적 증빙서류는 2018년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원칙

② 가점

① 대상자별 가점 부여 비율

구분	가점 부여 비율	비고
취업 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이 모두 해당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의사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② 가점 부여 세부 내용

구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 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 유효하게 등록된 사람 -의사자: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가점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 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 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5%: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3%: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선발 상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3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3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1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1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함
소수 선발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라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이 9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도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할 수 있음
가점 신청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함 (보훈상담센터 ☎ 1577 - 0606) ※ 원서 접수 마감일(2022. 10. 21.) 현재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의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5% 또는 3%)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함 ※ 원서 접수 마감일(2022. 10. 21.)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7. 합격자 결정

구분	합격자 결정
제1차시험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에 가산점과 가점을 합산한 제1차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제1차 시험 점수 = 1차 시험 성적 + 가산점 + 가점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로 한다. ※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한다.
최종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합격자는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제2차 시험의 성적에 각각 가점을 더해 합산한 최종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최종 점수 = (1차 시험 성적 + 가점) + (2차 시험 성적 + 가점)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합격자 결정을 위한 최종 점수에 가산점은 반영하지 않음 합격자 수는 선발 예정 과목별 선발 예정 인원 이내로 한다. 동점자가 있으면 다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취업 지원 대상자 ▶ 2순위: 제2차 시험의 성적(가점 제외)이 높은 사람 ▶ 3순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복무 만료) 예정자 포함) ▶ 4순위: 수업실연(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5순위: 교직적성 심층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6순위: 전공(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7순위: 교육학(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2차시험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된 사람은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퍼센트 미만(과락)인 사람 및 각 시험 단계별,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사람은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8. 최종 합격의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사람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 자격 제한 또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부정행위를 한 사람(당해 시험 무효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사람
-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사람
- 가산점/가점 부여 대상이 아닌데 가산점/가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사람
-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 를 제출했으나, 2023년 2월 말까지 해당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 (단, 발급기관의 사정으로 늦어지는 경우는 제외)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 외국 영주권자로서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해당 국의 영주권 유지 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 병역에 복무 중인 자로서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 나 <군복무확인서> 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단, 제출자는 임용유예 가능)

9. 시험 시행 일반원칙

- 응시원서(관련 증명서류 포함)를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경우, 공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응시원서에 입력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 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우리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제1차 시험 합격자만 제2차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합니다.
- 합격자 성적 사정은 지원자가 작성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응시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 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7. 합격자의 결정” 참고)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을 마치고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만 인정합니다.

- 공고한 시험 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면 사전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으로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으로 안내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공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의 귀책 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시험 단계별 합격자가 결격사유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면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교원 수급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시험 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사람은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돌려주지 않으며, 그 밖에 공고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0. 응시자 유의 사항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같은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연필, 사인펜, 지워지는 볼펜 등 사용 불가)를 사용해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 단, 답안을 수정할 때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해야 합니다(답안 수정 시 수정 테이프, 수정액 등 사용 불가).

- 시험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워치 등 소지(반입) 금지 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고 시험 시작 후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 등으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하며, 수험표를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은 시험 당일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시험본부에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주민등록번호 미표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장애인등록증] 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수험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음
- 필기구(검은색 볼펜 등)는 응시자 본인이 준비해야 하며 기타 보조기구(귀마개, 모자 등)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험 응시 중에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로 합니다.
 -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시험시간 중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단, 화장실 사용 편의 제공 신청을 한 임신부는 허용
- 시험 당일에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 등록차량 제외).
- 응시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 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해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 사항 및 응시자 유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 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정행위자 등으로 처리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5년간 시험 응시 자격 정지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사항,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증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보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

★ 소지(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스마트워치(밴드)·스마트센서, 전자담배,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전자시계,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 감독관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소지 금지 물품을 확인할 수 있음

4.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위의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별도 안내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 <https://www.sje.go.kr> 【새소식·인사·채용 -임용정보-중등교원】

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고 시험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검사와 손 소독을 하고 시험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손 소독 및 발열검사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여유 있게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외부인의 고사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며, 시험장 출입구에서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수험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도 착용 하되, 응시자 본인 확인 시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입·퇴실 및 화장실 이용 시 되도록 응시자 간 안전거리(최소 1m 이상)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 증상(또는 유사한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조치 합니다.

1) 기침·발열 등 의심 징후가 있는 응시자: 별도시험실에서 응시

2) 확진자·자가격리자: 일반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 또는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교육청)에 사전 신청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교육청 누리집, 2022. 11. 18.(금) 예정)

1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① 편의 제공 대상

○ <2023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지원자 중

①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단,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는 자에 한함

② 임신으로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편의 제공 신청 절차

※ ③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서류,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유형별, 임신부 편의 제공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해당 사항 확인 ※ 장애 유형(정도), 편의 제공 내용, 증명서류 등 				
↓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접수 시 장애인은 지원자 입력화면에서 본인의 ① 장애 유형, ② 장애 정도, ③ 편의 제공 요청 유무 항목을 입력하고, 임신부 중 해당자는 “편의 제공 요청 유무” 항목 입력 ※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또는 「임신부 편의 제공 신청서」에 기재 				
↓					
증명 서류 제출 (의사 진단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 제공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서와 함께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출서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1차 시험용) 【붙임2-1】 서식 ▶ 임신부 편의 제공 신청서(1차 시험용) 【붙임2-2】 서식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에 한함) ▶ 의사 진단서 등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출기간</td> <td>▶ 응시원서 접수 기간과 동일</td> </tr> </table> <p>※ 장애 유형별 증명서류 ☞ ③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서류(P. 26) 참고</p> <p>※ 제1차 시험 합격자 ☞ 2022.12.30.(금)~2023.1.2.(월) 기간 교육청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p>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1차 시험용) 【붙임2-1】 서식 ▶ 임신부 편의 제공 신청서(1차 시험용) 【붙임2-2】 서식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에 한함) ▶ 의사 진단서 등 	제출기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과 동일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1차 시험용) 【붙임2-1】 서식 ▶ 임신부 편의 제공 신청서(1차 시험용) 【붙임2-2】 서식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에 한함) ▶ 의사 진단서 등 				
제출기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과 동일				
↓					
증명서류 확인 · 제공 여부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기준에 의한 증명서류 확인 ○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또는 전화 연락 등으로 제공 여부 및 세부 사항 안내 				

③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서류

가. 장애 유형별 제1차 시험 편의 제공 내용

장애 유형 및 정도		편의 제공 내용	증명 서류	비고	
지체 장애	상지	공통	· 확대 문제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답안 작성용 컴퓨터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기존 1~3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기존 4~6급		
하지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 자	·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기존 1~6급	
뇌병변 장애	공통		· 확대 문제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기존 1~3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시험 시간 연장(1.2배)	· 의사 진단서	기존 4~6급
시각 장애	공통		· 확대 문제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답안 작성용 컴퓨터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 음성 지원 컴퓨터 ·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38호(2020.9.10.)에 따라 제작] ·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의사 진단서	기존 1~2급 기존 3급 2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	기존 3급 1, 2호

장애 유형 및 정도		편의 제공 내용	증명 서류	비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 음성 지원 컴퓨터 ·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38호(2020.9.10.)에 따라 제작] ·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의사 진단서	기존 4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기존 4, 5급 1호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의사 진단서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 이하
	· 위 조건 외의 시각 장애인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기존 5급 2호, 6급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기존 2~6급

※ 확대 문제지는 A3 규격의 13point, 18point,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 상이등급자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위 시각 장애의 시력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증명 서류 제출을 면제받은 시각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자라도 편의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세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의사 진단(소견)서는 발급 시 **참고**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장애유형 기존 등급 등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우면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나. 임신부 제1차 시험 편의 제공 내용

구분	편의 제공 내용	증명서류	비고
임신부	· 책상 높낮이 조절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편의 제공 신청서, 의사 진단(소견)서	임신부 상태를 고려하여 편의 제공 내용 결정

※ 의사 진단(소견)서는 발급 시 **참고**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다. 장애 유형별 제2차 시험(수업실연 및 교직적성심층면접) 편의 제공 내용

장애 유형 및 정도		편의 제공 내용	비고	
지체 장애	상지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 전담 도우미 지원 ·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 서식 확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기존 1~6급
	하지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 전담 도우미 지원 ·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기존 1~6급
뇌병변 장애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 전담 도우미 지원 ·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 서식 확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평가 시간 1.5배 연장	기존 1~3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기존 4~6급
시각 장애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 전담 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 서식 확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		· 관련 서식 점자 지원	기존 1~2급, 3급 2호, 4급 2호 중 점자 사용을 인정받은 자
	점자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청각 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시간 1.5배 연장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 필답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은 제1차 시험 합격자만 장애유형별로 편의 제공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붙임 2-3 서식】,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의사 진단(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할 때 스캔하여 제출한 증명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명서류로 갈음함

④ 시험시간 연장

○ 제1차 시험

시험 과목		시험시간		
		일반 응시자	1.2배 연장자	1.5배 연장자
교육학		09:00 ~ 10:00 (60분)	09:00 ~ 10:12 (72분)	09:00 ~ 10:30 (90분)
전공	A	10:40 ~ 12:10 (90분)	10:52 ~ 12:40 (108분)	11:10 ~ 13:25 (135분)
	B	12:50 ~ 14:20 (90분)	13:20 ~ 15:08 (108분)	14:05 ~ 16:20 (135분)

○ 제2차 시험

시험 과목	대상	시험시간	
		일반 응시자	연장 응시자 (1.5배)
수업 실연	▶ 뇌병변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청각장애	평가 20분	평가 30분
교직적성 심층면접		평가 15분	평가 23분

※ 제2차 시험의 시험시간 연장은 평가시간만 연장함

⑤ 편의 제공 신청 시 유의 사항

- 앞의 <장애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서류> 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 여부, 편의 제공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명서류 등을 확인해야 함

- ▶ 상이등급자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의 해당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확인
- ▶ 의사 진단(소견)서의 해당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기재

- 편의 제공(시험시간 연장, 점자 문제지, 점자 답안지, 확대 문제지, 음성 지원 컴퓨터 등)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입력화면에 편의 제공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

-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 입력 순서 【가점(가산점) 등 입력사항-4.장애인응시자】
① 본인의 장애 유형 → ② 장애 정도 → ③ 편의 제공 요청 유무 입력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붙임2-1 서식】 및 증명서류 스캔 파일 제출

▶ **임신부 편의 제공 신청 입력 순서** 【가점(가산점) 등 입력사항-5.임신부편의제공요청 유무】

- ① 임신부 편의 제공 요청 유무 선택 → ② 임신부 편의 제공 신청서 【붙임2-2 서식】 및 증명서류 스캔 파일 제출

유의 사항

- ❖ 점자 문제지를 신청한 사람은 점자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해야 하며, 음성지원 컴퓨터를 신청한 사람은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해야 함
 - ※ 단, 점자 문제지는 음성지원 컴퓨터 신청자(시각장애인) 중 신청자만 제공
- ❖ 음성지원은 센스리더 Pro/Next(ver 7.x.x.x) 환경으로 제공
-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 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자만 타당성 검토 후 제공
- ❖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 당일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사용할 수 있음

- 제2차 시험 관련 장애인 편의 제공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한 후 접수 예정

<참고>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

- 발급 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임신부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소견)서도 인정함
- 발급 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 이번 시험의 경우 2020년 10월 21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소견)서
-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아래 예시표 참고
 -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표 표시 내용 ①)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예시표 표시 내용 ②)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표 표시 내용 ③)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 제공 신청 가능 내용을 참고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 예시) 점자 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 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장애 유형·정도		발급 내용 예시
시각 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상기인은 ①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②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③ 점자 문제지, 시험 시간 연장, 음성 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상기인은 ①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②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상기인은 ①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②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 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③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		상기인은 ① 임신 00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산모로서, ②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③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및 책상 높낮이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13. 각종 증명 서류 제출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① 각종 증명서류 제출 대상 및 기간 ※ 자세한 방법은 1차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대상자	제출일	제출처	제출 방법
제1차 시험 합격자	2022. 12.30.(금) ~ 2023. 1. 2.(월) [2일간] 10:00 ~ 18:00 단,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원인사과(5층) ☎ (044) 320-2331, (044) 320-2321 (044) 320-2324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대리인 제출 가능(위임장 제출) -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증명서류 제출 목록표[붙임1]에 기입·편철하여 제출

※ 각종 제출(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으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여야 함 단, 교원자격증은 사본 제출

- 의사진단서(소견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② 제출서류

구분	제출 대상	제출 서류
공통	① 졸업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② 2023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 사범계대학 졸업 예정자	▶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졸업 예정자	▶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표기된 교직과정 이수 예정확인서 1부
	• 대학원 졸업 예정자	▶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 부전공과목 응시자	▶ 복수·부전공이수 예정확인서 1부
	※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는 자격 및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 포함)과 법정 해당 자격 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호로 표기된 것만 인정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취득 예정자의 경우,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소재한 시·도 교육청에서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를 발급받아 제출	
해당자	① 병역의무 이행자	
	• 병역필로 표기한 자	▶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적용 시 활용
	• 병역 복무 중인 전역 예정자 ※ 원서접수 마감일(2022.10.21.)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복무 만료) 예정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전역(복무 만료) 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1부 ※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적용 시 활용
②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자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 서류 일체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2차시험용) - 장애인 증명서 - 의사 진단(소견)서 ※ 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원본 서류 각 1부(단,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제출)	

14. 시험 관련 정보공개 안내

① 응시원서 최종 접수 결과 공개

- 공개장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
※ 누리집 주소: <https://www.sje.go.kr> 【경로】 새소식·인사·채용 > 임용정보 > 중등교원
- 공개일시: 2022. 10. 26.(수) 10:00 예정

② 시험 문제 공개

- 공개범위: 제1차 시험 문제
- 공개장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https://www.kice.re.kr>)
- 공개기간: 제1차 시험 시행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③ 비공개 시험정보

- 제1차 시험: 모범답안 및 평가 기준표, 문항별 취득점수 등
- 제2차 시험: 문제, 모범답안 및 평가 기준표, 문항별 취득점수 등

④ 합격선 및 개인별 성적 공개

- 합격선 공개: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개
※ 비공개: 개인별 석차, 합격 인원 2명 이하 과목의 합격선
- 공개장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
- 개인별 성적 공개: 응시자 본인의 시험 단계별 성적 공개

공개 대상	공개 기간	비고
제1차 시험성적	2022. 12. 29.(목) ~ 2023. 1. 13.(금)	
제2차 시험성적	2023. 2. 7.(화) ~ 2023. 2. 14.(화)	

※ 시험 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하거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으로 결시 처리된 자는 성적 확인 불가

⑤ 개인별 답안지 열람

- 열람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직후 우리교육청이 정하는 일정 기간
- 열람 범위: 응시자 본인의 1차 시험 답안지 열람만 가능(필사, 복사, 촬영 등 불가)
- 열람 절차 및 방법: 최종합격자 발표 시 열람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안내

- 붙임 1.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명서류 제출 목록표(서식) 1부.
2-1.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서식) 1부.
2-2. 임신부 편의 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서식) 1부.
2-3.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2차 시험용](서식) 1부.
3.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서식) 1부.
4. 제1차시험 합격자 각종 증명서류 대리 제출 위임장(서식) 1부.

【붙임 1】

2023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명 서류 제출 목록표

■ 인적 사항

응시과목		수험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제출 서류

제출대상		제출여부 (제출시 ○표)	제출서류	
1. 공통	졸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자격증 사본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 ◦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직과정 이수 예정확인서 ◦ 복수·부전공 이수 예정확인서 	중 해당 서류
2. 병역의무 이행자	병역필로 표기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 포함) 	
	병역 복무 중인 전역 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 원서접수 마감일(2022.10.21.) 현재 6개월 이내에 전역(복무 만료) 예정인 자 	
3.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2차 시험용) ※ 【붙임 2-3】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 붙임 서류 ※ 장애인 증명서,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청각 장애에 한함) 등 	

【붙임 2-1】 제1차 시험용(필기)

2023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 인적 사항

응시과목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자택:

■ 장애(상)이 유형 및 정도, 편의 제공 신청 사항 (해당하는 장애 유형 옆에 장애 정도를 기재)

장애 등 종류	정도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란에 "○"표시)												
		시간 연장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 (택1)						기타				
		1.2배	1.5배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컴퓨터(PC) 음성지원· 답안 작성	확대 문제지 답안 작성	글자 13P	글자 18P	글자 30P	축소문제지 (71%) (확대 독서기 사용자)	별도 시험실 (진석 간격조정)	휠체어 전용책상 (휠체어 사용자)	수화 통역사 배치	서면안내 자료제공
지체 장애	상지													
	하지													
뇌병변장애														
시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하거나 점자 사용 필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점자 사용 필요없음													
청각장애														
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 및 특이 사항		※ 기재(예: 확대 독서기, 확대경 지참 등)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 유형 및 정도별로 신청 가능한 사항만 신청해야 함(X표는 지원 불가)

※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는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함. 다만, 확대문제지 및 축소문제지를 신청하면 답안작성 PC 중복 선택 가능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하면 답안은 PC로만 작성함(점자 문제지는 신청자만 제공)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교육청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모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

2. 의사진단(소견)서[편의 제공 신청 시 의사진단(소견)서 제출 해당자] 1부.

2022.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귀하

【붙임 2-2】 제1차 시험용(필기)

2023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임신부 편의 제공 신청서

■ 인적 사항

응시과목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자택:

■ 임신부 편의 제공 신청 사항

편의 제공 내용	신청 여부(해당란에 “○” 표시)
책상 높낮이 조절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이동 및 화장실 대기 시간(2인 이상 동시 사용 금지), 감독관에 의한 소지품 검사 등)은 시험시간에 포함됨

본인은 임신부 편의 제공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교육청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의사진단(소견서) 1부

2022.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귀하

【붙임 2-3】 제2차 시험용(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2023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 인적 사항

응시과목		수험번호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자택:

■ 장애(상이)유형 및 정도, 편의 제공 신청 사항 (해당하는 장애 유형 옆에 장애 정도를 기재)

장애 유형	장애 정도	편의 제공 신청 내용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별로 제2차 시험(수업실연·교직적성 심층면접)에 신청 가능한 사항만 필요한 편의 제공을 신청해야 함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 제공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교육청에서 최종 확인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단, 제1차 시험 시, 미제출자에 한함).

2. 의사진단(소견)서[편의 제공 신청 시 의사진단(소견)서 제출 해당자] 1부.

※ [붙임 1·2] 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 제출 서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제출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귀하

【붙임 3】

2023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사회취약계층 응시자만 해당)

■ 인적사항

응시과목		성명		생년월일	
------	--	----	--	------	--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응시자 해당 여부란에 “○” 표시)

면제대상	응시자 해당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 납부 내역(납부방법 해당란에 “○” 표시하고 내용 작성)

납부방법		비고
신용카드 결제 []	은행 계좌이체 []	
<input type="checkbox"/> 카드소유주명: <input type="checkbox"/> 카드사명: <input type="checkbox"/> 카드결제일자:	<input type="checkbox"/> 계좌예금주: <input type="checkbox"/> 이체은행명: <input type="checkbox"/> 이체일자:	

※ 카드사명 작성예시: 롯데, 외환, 현대, 국민, BC, NH, 하나SK, 삼성 등

※ 이체은행명 작성예시: 농협, 우리, 광주, 제일, 국민, 하나, 외환, 우체국 등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의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응시수수료 면제(환불)를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귀하

【붙임 4】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준용)

위 임 장

위임 내용	2023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각종 증명서류 대리 제출
-------	--

위임받는 사람 (대리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핸드폰/전화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위임하는 사람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핸드폰/전화번호)	

위와 같이 2023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각종 증명서류 대리 제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귀하

※ 위임하는 사람(지원자) 및 위임받는 사람(대리 제출자) 신분증 지참

유의 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54g/㎡]